"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"

KMA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

KOREAN MEDICAL ASSOCIATION

㊥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1/전송(02)796-4487
팀원 손제호(6541)/ E-mail: sjeah@kma.org

문서번호 중윤위 제2013-65호

시행일자 2013. 6. 20.

수 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

참 조

제 목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 관련 소속 회원 주의환기 요청의 건

1. 관련근거 : 1) 중윤위 제2013-47호(2013. 4. 30. 시행)
2) 대소내 제2013-1468호(2013. 5. 20. 시행)

2.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상기 1)호와 같이, 본 중앙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 처방 회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전문가집단인 귀 학회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으며, 귀 학회는 상기 2)호와 같이 회신을 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본 중앙윤리위원회는 2013년 6월 1일 개최된 제6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동 사안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였는 바, 귀 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에 회신키로 하였으며, 관련 학회 회원들에 대해서도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관련 학회에 계도를 요청키로 결정하였습니다.

4. 이에, 본 중앙윤리위원회는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에 관한 주의 환기를 귀 학회에 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끝)

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

"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"